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문막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4년 12월 2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정**	정** 1936-02-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재등록
정**	최** 1993-11-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재등록
정**	최** 1995-04-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재등록
이**	이** 1965-02-0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천마산길	재등록
이**	이** 1968-07-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재등록
김**	김** 1976-11-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천마산길	재등록
김**	김** 1977-12-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지샘등안길	재등록
김**	김** 1980-01-2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재등록
이**	이** 1989-01-0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담당자 : 최설현 문의전화 : 033-737-5573)

2024년 12월 13일

문막읍장 인

